

2010. 6.

남원의료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전라북도
(감사관실)

남원의료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순번		제 목	의 결 내 용									
			행정상			재 정 상(천원)					신 분 상	
			시정	주의	개선	계	회수	감액	추징	환급	징계	훈계
일련 번호	페이지											
계		10 건	4	4	2	10,697		10,697				3
1	1	인사위원회 운영 및 징계집행 부적정		○								김 변
2	4	팀장직 직위해제 부적정	○									(감)
3	7	정년연령 초과한 의사 채용 부적정		○								
4	9	이월예산 제도 운영 부적정			○							
5	12	계약체결, 회계제도 운영 등 소홀			○							양
6	15	건강증진센터 개보수공사 추진 부적정		○								
7	17	지열원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			10,697		10,697				
8	19	진료비 징수 소홀	○									
9	21	배상금 지급관련 세부규정 미 제정 및 위로금 지급액 구상권 미 청구	○									
10	23	진료수입 등 세입조치 지연 및 수입관리 소홀		○								

[일련번호 : 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남원의료원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제 목] 인사위원회 운영 및 징계집행 부적정

[현 황]

1. 징계집행 내역

징 계 의 결 집 행 내 역							징계심의	비 고
집행일	소 속	직위, 직급	성명	사유	요구	의결, 집행		
'07.10.12	진료부	의사직	김	도감사 결과	경징계	불분(경고)	징계위원회 (9명)	표창감경
"	관리부	관리 부장	김	"	"	불분(경고)	"	"
"	"	총무 팀장	변	"	"	불분(경고)	"	"
'07.11.14	마취통증 의학과	과 장	김	촉탁진료 민원	경징계	견책	인사위원회	
"	가정 의학과	교육수 련부장	배	"	"	불문(경고)	"	표창감경
"	"	과 장	박	"	"	견책	"	
'08.12.10	관리부	3급	김	직원채용 관련 조사	정직	감봉(1월)	인사위원회	성실감경
"	원무팀	4급	변	"	정직	감봉(1월)	"	"
"	총무팀	5급	김	"	감봉	불문(경고)	"	성실, 표창 2단계감경
'09.12.11	영상 의학실	보건 3급	황	성추행관련	정직	감봉1월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표창감경
"	총무팀	보건 8급	박	" 지휘책임	파면	파면	"	

- 노조와 단체협약을 이유로 인사규정에 없는 징계위원회를 임의 구성
- 위원 10명(노조측 5, 사용자측 5)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 2회 5명

[위법부당내용]

-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지도·감독)에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인사, 보수 등에 관한 제 규정의 제·개정 에 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남원의료원 인사규정 제2조(적용범위)에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인사규정 제10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11조(인사위원회 구성), 제1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13조(인사위원회 회의)에 인사에 관한 운영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사기본 방침수립, 직원의 징계, 표창 등의 업무를 심의 의결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인사규정 제59조(징계의 감경)에 인사위원회는 훈장, 표창 등의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7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고,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됨.
- 남원의료원에서는 현황과 같이 4차례에 걸쳐 11명에 대하여 문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 원장의 징계의결 요구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를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 노조와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동수로 징계위원회(10명의 위원)를 구성하여
 - '07. 10. 12 도감사결과 징계처분요구에 대하여 3명, '09. 12. 11 성추행 관련 징계처분요구에 대하여 2명에 대한 징계 심의 의결을 받아 현황과 같이 징계집행 한 사실이 있으며
- 현황과 같이 징계사안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의결하거나 징계위원

회 심의·의결 또는 인사위원회 심의 후 징계위원회 중복 심의의결 현상이 발생하는 등 원칙없이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있는데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징계 심의의결에 있어서 성실감경은 제도개선 등의 노력에 대한 감경 하여야 할 사항이고 현황의 '08. 12. 10일 김 등 3명의 징계의결 건은 신규 직원 채용 건에 대한 전라북도 감사관실의 조사결과에 의한 처분요구에 의한 징계처분 건으로 성실감경 대상이 아닌데도
 - 현황과 같이 인사위원회에서 김, 변 에 대하여 1단계 감경 의결하여 감봉1월 징계처분 하였고
 - 김 에 대하여는 성실감경과 표창감경은 중복하여 감경 의결한데 대하여 재심의 의결요구를 하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 의결대로 현황과 같이 불문(경고) 처분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징계처분시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에 대한 원칙을 정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 앞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에 맞지 않게 감경 등 의결시 재심의 의결 요구하여 양정에 합당하게 징계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상 조치]

- 남원의료원 관리부장 사무직3급 김 “훈 계”
- 1, 2번 병합
- 남원의료원 총무팀장 사무직4급 변 “훈 계”
(현 원무팀장)

[일련번호 : 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남원의료원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제 목] 팀장직 직위해제 부적정

[현 황]

1. 승진발령 사항

- 대 상 자 : 장
- 승진직급 : 사무직5급 → 사무직4급
- 보 직 : 장례사업팀장
- 임 용 일 : '08. 8. 1

* 보직변경 : '08. 2. 1 원무팀장, '08. 12. 1 총무팀장

2. 직위해제 내역

- 대 상 자 : 총무팀장 장
- 직위해제 : 2010. 1. 1 ('09. 12. 16 결재)
 - 총무팀 근무를 명함 (인사발령 방식으로 총무팀장 보직해임)

* '10. 4. 1 보직 없이 기획조정실 기획예산팀으로 발령

[위법부당내용]

- 남원의료원 인사규정 제2조(적용범위)에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인사규정 제30조(보직의 원칙)에 직원의 보직은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직책요구 자격에 부합되는 급호 및 특기에

의하여 적격자를 보직하고 직종별, 직급별 정원의 범위내에서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인사규정 제7조(인사발령 절차)에 직원의 인사발령은 급호를 사정하여 발령하고 '별표3'호의 서식의 임용장을 교부하여 행하고, 승급, 전직, 전보, 휴직, 직위해제는 '별표4'호의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함으로서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인사규정 제9조(신분보장)에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정직, 면직, 기타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에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직위해제 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여야 하며
 - 임용권자는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지방공무원법 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에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여야 하며
 -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공무원이 제1항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됨.

-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인사규정에 보직관련 및 직위해제 관련된 조항이 없으므로 보직자에 대한 직위해제가 불가피한 경우 전라북도의 적용 법령·규정 등을 준용하는 것이 합당하고
 -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는데도
 - 아무런 사유 없이 현황2와 같이 총무팀장 장 를 2010. 1. 1(2009. 12. 16 발령)자로 '관리부 총무팀 근무를 명함'으로 인사발령 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직위해제 조치를 하였고
- 지방공무원법 준용시 직위해제를 위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의 거쳐야 하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직위해제시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없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불복절차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 직위해제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총무팀장 장 를 직위해제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직위해제 조치의 유지가 필요할 경우 관련 절차 이행과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으로 직위해제 소멸시 보직을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상 조치]

- 남원의료원 관리부장 사무직3급 김 “훈 계”
 - 1, 2번 병합

[일련번호 : 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남원의료원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제 목] 정년연령 초과한 의사 채용 부적정

[현 황]

1. 의사 채용 내역('07. 7월이후) : 10명

○ 2007년도 1명, 2008년도 3명, 2009년도 3명, 2010년 3명

* 결격사유 조회 미이행 등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절차 미이행

2. 의사채용 부적정 내역

○ 채용 일 : '07. 10. 1

○ 채용의사 : 윤 (안과과장 보직)

○ 결격사유 : 64세('43. 3. 13생)로 채용가능 연령 초과

* 인사규정상 57세 정년

[위법부당내용]

○ 남원의료원 인사규정 제2조(적용범위)에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인사규정 제4조(직종)에 직원의 직종은 의사직, 약사직, 간호직, 사무직, 보건직, 기능직과 고용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인사규정 제17조(신규채용의 방법)에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고시 또는 전형으로 실시하며, 자격증·면허증 소지자 및 경력을 가진자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접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 인사규정 제22조(직원의 계약제 운영)에 의사직 또는 전문직종은 계약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직종은 면허증,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 인사규정 제19조(응시연령), 제43조(정년)에 의료직 채용연령은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의사직의 정년은 57세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의사직 채용을 위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면접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하여야 하는데도
 - 현황과 같이 2007. 7월 이후 10명의 의사를 채용에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면접기록이 없음은 물론 임용 결격사유 조회 없이 채용하였으며
- 의료원에서는 의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57세 이하 연령의 의사를 채용하여야 하는데도
 - 현황2와 같이 윤 은 만 64세로 의료원 정년연령을 초과하였으므로 의사로 채용할 수 없음에도 인사규정을 위배하고 '07. 10. 1 안과과장으로 채용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의사 채용에 있어서 인사규정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채용절차 이행후 채용하시고, 인사규정에 의한 정년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 별도의 채용절차, 규정이 필요한 경우 인사규정을 보완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남원의료원

[행정상 조치] 개 선

[재정상 조치]

[제 목] 이월예산 제도 운영 부적정

[현 황]

1. 이월처리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이사회 승인일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2	9,458,315	16	8,781,216	6	677,099	
2007년	2007.12.26	1	68,100	1	68,100			
2008년	2008.12.30	8	3,555,352	5	3,413,364	3	141,988	
2009년	2009.12.29	13	5,834,863	10	5,299,752	3	535,111	

2. 부적정 이월처리 내역

○ 이월사업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중복편성 : 22건, 9,458,315천원

○ 명시이월 예산을 다음연도에 재 명시이월(2009 → 2010년)

- 계 : 2건 , 1,220,944천원

- 건강증진센터 환경개선사업 111,538천원

- 재활 요양병동 리모델링 1,109,406천원

○ 사고이월예산을 익년 예산에 편성후 추경에서 삭감

- 건강증진센터 시설 개보수 등 3건 141,988천원

· '08년 사고이월사업비를 '09년 당초예산 편성

· '09년 예산편성액 1회추경 전액삭감

[위법부당내용]

- 남원의료원 회계규정 제2조(적용범위)에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업무는 이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회계규정 제3조(예산 및 회계연도)에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연도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 회계규정 제57조(예산의 이월)에 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공사, 제조 또는 구매중에 있는 자본예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지방재정법 제6조(회계연도)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사고이월비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됨.
- 전라북도 재무회계규칙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에 본청 실·과장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1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예산업무담당과장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도록 규정됨.

- 남원의료원에서는 이월예산을 처리함에 있어서 회계규정에 이월예산제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공사 등 추진 중인 사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인정하면서 이월제도에 대한 세부규정을 정하지 않은 채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이월예산 처리에 있어서 사고이월비는 집행부 자체적으로 이월 처리 하여야 할 사안인데도 현황과 같이 6건 677,099천원 상당의 이월비를 이사회의 의결로 사고이월처리는 부적절하며
 - 지방자치단체의 이월처리 방법에 의할 경우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는 다음연도 연초에 의료원장의 결심을 받아 이월예산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도 이월비를 확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월제도 운영이 소홀하고
 - 이월사업비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예산현액으로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2008년 이월비 8건 3,555,352천원, 2009년 이월비 13건 5,834,863천원 합계 21건, 9,390,215천원을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편성함으로서 회계연도간 예산이 이중 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 명시이월비는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에 대하여 이월이 가능하고 명시이월사업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비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사고이월이 가능한데도
 -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명시이월 된 건강증진센터 환경개선사업 11,538천원, 재할 요양병동 리모델링 1,109,406천원 계 2건 1,220,944천원 사업비를 2010년으로 재 명시이월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이월과 관련하여 세부규정을 마련하거나 전라북도 적용 법령을 준용하여 이월액 확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람
- 이월예산을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현액으로 지출하시고
- 명시이월은 이사회에서 의결받은 범위내에서 이월액을 확정하시고, 사고이월은 자체적으로 이월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남원의료원

[행정상 조치] 개 선

[재정상 조치]

[제 목] 계약체결, 회계제도 운영 등 소홀

[현 황]

1. 청소용역계약 체결 내역

(단위 : 천원)

계약체결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비 고
'09.3.13	'09.4.1~'10.3.31	수의계약	344,482	(주) 개발	
'10.3.31	'10.4.1~'11.3.31	"	351,442	(주) 개발	

2. 회계담당(관직) 지정 및 운영

- 계약담당 - 원장, 분임계약담당 - 관리부장
- 지출담당 - 원장, 분임지출담당 - 경리팀장, 총무팀장

3. 예산집행 관련

- 지출관련 제 서식 미제정 (회계규정)
- 지출원인행위부 미등재
- 지출증빙서 편철 및 보관 부적정
 - 계약서 등 지출서류를 지출증빙서가 아닌 별도 편철 보관

[위법부당내용]

- 남원의료원 회계규정 제2조(적용범위)에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업무는 이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지방재정법 제67조(지출원인행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회계규정 제3조(예산 및 회계연도)에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연도와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 지방재정법 제6조(회계연도)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회계규정 제7조(회계담당)에 회계에 관한 독립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을 원장으로 분임계약담당을 관리부장으로 지출업무 담당에 원장으로 분임지출담당에 경리팀장, 총무팀장으로 회계담당 등을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 되어 있으며
- 전라북도재무회계규칙 제126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수입 또는 지출 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하고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남원의료원에서는 지출원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회계연도 내에 예산이 배정된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 현황 1과 같이 청소용역 계약을 '09년에는 '09. 4. 1 ~ '10. 3. 31까지 344,482천원, '10년에는 '10. 4. 1 ~'11. 3. 31까지 351,442천원 합계 692,924천원 상당을 회계연도를 경과한 기간을 포함하여 (주) 개발 과 계약체결 하였으며
- 회계관직을 지출담당, 계약담당 등 “회계담당”을 두는 것으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서 조직상의 담당과 회계관직의 담당이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고 각 담당별 역할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음은 물론
 - 금액별 직무위임을 정하지 않고 운영하면서 지출에 있어서 분임지출담

당은 경리팀장임에도 권한 없는 관리부장의 결재까지 받아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 입찰공고시에 회계관직에 없는 경리관 명칭을 사용하여 공고하는 등의 회계제도 운영에 문제점을 야기한 사실이 있음.

○ 지출결의서 등 지출관련 서식이 회계규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규정에 않은 채 임의로 지출서식을 적용하여 활용함으로써 업무추진에 표준화가 되지 않고 있고

- ✓ - 지출원인행위시 원인행위부에 등재하여야 하는데도 원인행위부에 등재하지 않고 있으며

○ 계약서 등 지출관련 서류는 원본을 지출증빙서류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 계약서, 관련서류 원본을 지출증빙서류에 편철하여 보관하지 않고 별도 보관하는 등 부적정하게 지출증빙 서류를 보관관리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회계규정상 '회계담당'의 각 역할에 대한 명확히 개념을 재정립하시고 금액별 직무위임 범위를 정하시기 바람

○ 회계규정은 지방계약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거나 준용하도록 하시고

○ 회계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지출결의서 등 회계서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출원인행위시 원인행위부에 등재하시며

- 계약서 등 지출증빙서 원본을 지출증빙서류에 편철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상 조치]

○ 경 리 팀 팀 장 사무직4급 양 "훈 계"

[일련번호 : 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남원의료원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제 목] 건강증진센터 개보수공사 추진 부적정

[현 황]

- 공 사 명 : 건강증진센터 개보수공사
- 규 모 : 705m² (기존 지상 1층)
- 계약금액 : 240,526천원
- 착 수 일 : '09.8.24
- 준 공 일 : '10.1.16
- 시 공 자 : (유) 건설

[위법부당내용]

1. 감독 및 검사업무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제17조(검사)에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하고, 계약내용이 완료한 때에는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에 감독과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남원의료원에서는 건강증진센터 개보수공사를 '09.8.20일 (유)

건설 대표 배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공사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임명하여 공사감독 하여야 하고, 공사 완료시에는 공사감독자가 아닌 자를 검사자로 임명하여 계약내용의 적정 이행 여부를 검사해야 하는데도,

- '09.8.24일 착공이후 공사완료시까지 계약이행을 감독할 공사감독과 준공검사자를 임명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 공사 감독과 검사업무는 건축 담당 이병주가 겸직하면서 준공검사조서를 임의 작성하는 등 감독 및 검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함.

2. 장애인 화장실 시공 부적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별표1]에 의하면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 한 화장실의 대변기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m 이상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 건강증진센터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좌측 또는 우측에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할 수 있는 유효폭 0.75m 보다 0.20m 이 축소된 0.55m으로 시공되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미달되 게 시공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감독 및 검사자를 별도 지정하여 계약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화장실 기준미달 시공에 대하여는 시설물 개보수시 '장애인 편의 시설 세부기준'에 맞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남원의료원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감액 10,697천원

[제 목] 지열원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현 황]

- 공 사 명 : 지열원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
- 천공수량 : 지하 200m/180공
- 계약금액 : 2,424,102천원
- 착 수 일 : '10. 3. 12
- 준공예정일 : '10. 7. 9
- 시 공 자 : (주) 에너지 대표 김

[위법부당내용]

1. 공사원가계산 산정 부적정

- 건설공사를 설계할 때에는 현지여건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에 의한 건설표준품셈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해야 하는데도,

가. '지하경유탱크철거 및 용도폐지공사' 원가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용도폐지되는 지하유류저장시설 주위에 포설된 모래(402톤)에 대하여 '10.4.9일 (재) 연구소에서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이상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폐모래 처리비로 6,312천원 상당이 과다계상됨 .

나. 폐모래 처리에 따른 운반비용으로 남원에서 남원 처리장까지 반영된 운반비 1,818천원 상당이 과다계상됨.

다. 지하유류저장시설 주위 모래파내기(인력40%+기계60%)를 공사내역에 반영했는데 내부모래반출(402톤) 명목으로 2,567천원 상당을 이중으로 과다계상됨.

라. 위 '가~다'와 같이 10,697천원(원가계산 포함액)이 과다계상됨.

2. 공사현장 안전 및 환경관리 소홀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건설공사의 환경관리)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안전관리, 환경훼손·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원가에 계상하여야 함.

○ 남원의료원 지열원 냉난방시스템 공사내역을 살펴보면 안전관리비 38,946천원 및 환경보전비 5,093천원 상당이 공사비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병원과 공사현장을 구획하는 가설울타리 또는 가림막을 설치하고, 토지굴착으로 인한 소음·진동을 완화할 수 있는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하는데도,

가. 병원입원실과 공사현장이 가설울타리 또는 가림막 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하여 안전관리 및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나. 지하 200m 토지굴착작업으로 공사현장이 진흙과 오니 등으로 오염되어 있는데도 세류시설 등 필요한 방지사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소음·진동을 완화할 수 있는 비산방진포 또는 방진막(부직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적정한 안전 및 환경관리를 소홀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폐모래 재사용에 따라 과다계상된 10,697천원은 감액조치 하시고

○ 병원입원실과 공사현장을 안전하게 구분하고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 조치와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철저한 폐공처리로 지하수 오염을 방지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남원의료원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제 목] 진료비 징수 소홀

[현 황]

- 미 수납액 총액 : 625건, 154,731천원
- 2002 ~ 2007 : 570건, 106,631천원
- 1998 ~ 2001 : 55건, 48,100천원

[위법부당내용]

- 남원의료원 회계규정 제90조(납입의 독촉) 및 제91조(불납한 경우의 처리)의 규정에 의하면 진료비 납입 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납입기간 경과 후 7일 이내 독촉장을 발행하여야 하고
- 불납 내용을 조사한 결과 납입의 가망이 없거나 납입을 태만히 한 자에 대하여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제소 등의 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의료수가 관리규정 제6조(연대보증인의 책임)에 제 요금을 본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되어 있음.
- 남원의료원에서는 1998 ~ 2010. 3월현재 진료비체납액 625건에 154,731천원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여 채권 확보를 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에도 진료비 체납액 징수를 소홀히 함으로써 체납액이 매년 누증됨에 따라서 결

과적으로 의료원 재정에 손실을 초래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조치를 취하시고
- 징수가능분에 대하여는 제소 절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 지속, 반복적인 징수 독려로 진료비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남원의료원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제 목] 배상금 지급관련 세부규정 미제정 및 위로금 지급액
구상권 미 청구

[현 황]

○ 위로금 지급 내역

(단위 : 천원)

지급일	금 액	지 급 자			진료과목	담당 의사 및 간호사	비 고
		성 명	나이	성별			
합계	214,800	6명					
'07. 1. 31	5,000	신	08	여	소 아 과	박	신금열 치료중 사망
'07. 9. 28	197,000	천	41	남	내 과	한	약과다 투여실명 (9,850천원 구상)
'08. 3. 17	6,100	김	58	남	신경외과	이	추간판 탈출증 후유증
'08. 5. 23	300	유	75	남	응 급 실	인 턴	다리주사 감염
'08. 7. 11	1,400	이	71	남	안 과	장	수술 후 시력저하
'09. 7. 24	5,000	정	69	남	내 과	장	십이지장 천공

[위법부당내용]

- 남원의료원 복무규정 제6조(성실 의무)에 직원은 관계 법령과 병원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지시에 따르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규정 제11조(손해 배상)에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병원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진료사고 배상규정 제3조(배상책임)에 진료사고의 발생으로 민사상 판결에 의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병원이 부담하되 병원은 판결의 내용과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담당 진료의사에게 배상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진료사고 배상규정 제5조(배상심의)에 진료사고에 대한 배상심의를 위하여 배상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제7조(시행세칙)에 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됨.
- 따라서 진료사고 배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진료사고에 배상과 구상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한데도 세부규정을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 남원의료원에서는 2007. 1 ~ 2009. 7까지 폐결핵 주사약 과다 투여로 인한 실명, 추간판 수술 후 휴유증, 주사감염, 대장 내시경 중 십이지장 천공, 백내장 수술 후 시력 저하 등으로 위 현황과 같이 신 등 6명에게 214,800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한 바 있으며
- 담당 진료의사 및 간호사에게 책임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구상하여야 하는데도
 - 천 환자에게 배상한 197,000천원에 대하여 9,850천원(1건)만을 구상하고 신 등 5명에게 지급한 17,800천원에 대하여는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진료사고에 배상과 구상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절차 등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시고, 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도록 개선하고
- 배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담당 진료의사 및 간호사에게 책임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남원의료원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제 목] 진료수입 등 세입조치 지연 및 수입관리 소홀

[현 황]

○ 연도별 진료비 등 징수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비 고	
						년도	평잔
계	62,862,207	5,063,912	20,033,871	18,465,563	19,298,861		448,724
의료보험 관리공단	28,010,232	2,470,481	9,123,905	8,175,556	8,240,290	'10	225,730
각 시 군	14,859,281	980,778	4,149,187	4,347,657	5,381,659	'09	159,930
자 동 차 보험회사	4,537,922	446,233	1,240,050	1,283,327	1,568,312	'08	63,064
산 재 보험공단	1,038,217	63,301	384,398	307,549	282,969		
카드회사	10,253,884	821,310	3,708,729	3,054,621	2,669,224		
기 타 (검진 등)	4,162,671	281,809	1,427,602	1,296,853	1,156,407		

[위법부당내용]

- 전라북도남원의료원 회계규정 제2조(적용 범위)에 병원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 전라북도 재무회계규칙 제74조(자금운용) 제1항에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남원의료원에서는 의료보험공단, 각 시·군, 자동차 보험사 등으로부터 계좌 입금된 수입금은 즉시 수입 조치하여 활용이 필요한데도
 - 위 현황과 같이 2007 ~ 2010. 3까지 진료수입금 등 62,862,207천원 상당액을 계좌 징수하면서 주 1회 정도 세입 조치하였으며
- 보통예금 계좌에 연 평균 448,724천원의 자금을 예치함으로써 정기예금 이율 3 ~ 5%를 계상할 경우 18,820천원 정도의 이자수입 감소를 초래하는 등 세입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앞으로 계좌징수한 진료 및 진료외 수입은 즉시 수입 조치하시기 바람
- 정기예금 등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자금을 예치하여 이자 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